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48

발의연월일: 2024. 7. 3.

발 의 자:김병주・민병덕・정성호

윤후덕ㆍ허 영ㆍ정동영

추미애 · 임오경 · 위성락

박지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을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하는 학군사관·부사관 제도를 두고 있음.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의 신체검사는 원칙적으로 군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지원자의 경우 신체검사를 받는데 불편이 있음.

군 병원기능 효율화를 위한 군 병원일부 해체와 2020년코로나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신체검사가 제한되어 육군과 공군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진기관(민간기관)에서 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군의관이 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에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이 군병원 외에 병무 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7조제3항).

법률 제 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 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병원 또 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①・②	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
	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
	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